

검찰 60주년, 검찰의 정치화와 권력화 어떻게 할 것인가



사 회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좌 답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건국대 법대 교수)
이호중 (서강대 법대 교수)
김진욱 (변호사,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민경한 (변호사, 민변 전 사법위원장)

일 시 2008년 10월 29일(수) 오후 2시
장 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의실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검찰 60주년에 즈음해, 그동안 검찰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새로운 검찰개혁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검찰 60주년, 검찰의 정치화와 권력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좌담회를 열었다. 본 글은 이 좌담회를 지면에 옮긴 것이다.

박근용 며칠 후인 10월 31일이면 검찰 60주년이 됩니다. 검찰 스스로도 나름대로의 발전전망을 발표하겠지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검찰 개혁을 주장해 온 시민사회단체들도 한번 모여서 검찰 개혁과제에 대해 좀더 많은 이야기가 나누어 보자는 취지로 이런 자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더욱이 최근 검찰의 행태를 보면 정치화와 권력화의 경향이 더욱 심해진다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진행 방식은 각 분들이 토론의 요지를 말씀하시고 그 후 쟁점이 되는 논지를 잡아 전체적인 토론을 하는 걸로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한상희 선생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은 다른 방향의 검찰개혁이 필요한 시점



한상희 우리나라에서 검찰은 아주 특별한 권력입니다. 일단 수사와 기소라고 하는 형사사법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정식재판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라도 구속 기소라는 방식으로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과 법관이 하는 일은 사후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정당화하는 것에 한정되며,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기소되면 법관은 또 두어 달 재판하면서

그를 구치소에 묶어둔 뒤에 막판에는 피고인이 이렇게 서너 달 고생하였다가 이유로 집행유예 석방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과인 것입니다. 여기서 무죄 추정이니 인신보호니 하는 것이 무의미한 이유가 검찰에 의해 구속되는 순간, 일단 유죄판정을 받는다는 점 때문입니다. 또 기소독점주의나 기소편의주의는 그 특별한 권력을 완성시키는 장치가 됩니다. 마음에 들면 풀어주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하는 막강한 재량권이 나오는 것입니다.

검찰이 권력과 밀착된 과정을 좀더 살펴보면, 과거 군사정권의 적나라한 폭력을 법으로 포장해 합법성과 정당성을 부여해 준 선봉이 바로 검찰이었

고 그러면서 정치권력의 부스러기를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되면서 양상이 약간 복잡해집니다. 이 때 새롭게 자리잡은 두 권력이 자본권력과 관료권력인데, 검찰 권력은 크게는 관료권력에 속하지만 ‘준사법’이라는 틀 속에서 정통 관료보다는 독립성의 확보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가운데 좀더 자율적으로 발전합니다. 즉, 어떨 때는 정치권력을, 어떨 때는 자본권력을 숙주 삼아 기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 독자성을 주장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번 정권에서 촛불집회 등에서 검찰이 보이는 태도는 지난 시대부터 쭉 이어졌던 정치유착의 한 예일 것이고, 또 삼성 장학생이니 하면서 금권에 순치되는 경향은 두 번째 예에 해당될 것입니다. 지난 정부 때 평검사들의 반발은 세 번째 경우의 가장 두드러진 예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검찰은 6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속성에 권력이라는 부분을 집어넣고 이를 활용하고 행사하고 누리면서 변화해 왔고, 현재도 면면히 이어진다는 것은 우리 시대가 과거사 청산을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지난 5월에 월드뱅크는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수준이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치란 단지 데모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나 법원 등이 독립성과 투명성을 갖지 못해서 법에 대한 신뢰를 창출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일진대, 이런 낮은 법치 수준의 문제에도 우리 검찰은 책임이 있습니다. 즉, 국가경쟁력과 신인도를 위해서라도 검찰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맥락에서 검찰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 하는 점에 들어가면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사실 막막합니다. 그동안 많은 검찰개혁방안이 제기되고 또 일부는 실현되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좀더 다른 방식의 검찰개혁을 모색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검찰은 스스로가 준사법부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감시할 수 있는 뚜렷한 국가기구나 관료기관이 별로 없습니다. 유일한 것이 국회의 법제사

법위원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법사위조차도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로 가득 해 전부 한술밥 식구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일단 논의 방향만 제시해 보면, 이런 막강한 권력은 중앙집중의 형태로 할 게 아니라 분권식으로, 그것이 현재의 고검 단위든, 아니면 광역시도 단위든 간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서 권한을 분산시키고, 좀더 나아가서는 지역주민들에 의해 선출되고 감시되고 통제되는 이런 방향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던지고 싶습니다.

검찰만이 사실 확정권을 갖는 것은 정당한가?



이호중 저는 일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도대체 뭐냐. 그냥 대통령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이나 하는 부분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여정부 시기를 돌이켜 보면 대통령이 검찰을 도구화하지 않았다고 선언을 했었고 또 상당 부분 지켜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 검찰의 행태를 보면,

청와대로부터는 어느 정도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치의 의미를 좀더 확장시켜 보면 철저하게 기성 보수우파의 이해를 대변해, 좀더 구체적으로는 그간 만들어진 자본가 계급의 이해를 대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외피를 쓴 채 다원화된 형태의 보수지배계급을 인정하고 검찰 자신도 공고하게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한 시점이 오히려 노무현 정부 때가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즉,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이라는 외관만 오히려 심어줬던 이야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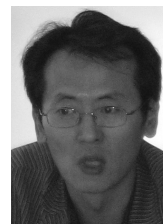
그렇게 보았을 때, 한상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 권력의 본질적 실체가 무엇인지, 어떤 과정으로 검찰 권력은 작동하는지를 파헤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사건을 디파인(define), 즉 정의한다는 것이 검찰 권력의 요체라고 봅니다. 물론 법원도 일정 정도 그런 권한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법원은 거쳐야 할 절차가 무척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범죄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검찰의 권한입니다. 실제 많은 사건들이 법원에 가기 전에 이미 검찰에 의해 실체가 사회적으로는 이미 규명돼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말하자면 검찰은 강도를 단순한 절도로 기소할 수도 있고, 반대로 범죄가 아닌 것도 범죄로 포장해 기소할 수 있습니다. 또 합법 틀 내의 집회나 시위도 공안사건으로 부풀릴 수 있고, 정당한 노조의 파업을 빨갱이라고 색깔을 덧씌울 수도 있습니다. 최근의 촛불집회, PD수첩,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등은 그 극명한 예인데, 현상적으로는 대통령의 입맛에 따라서 종속된 모습이지만, 사실은 검찰이 이러한 사건 정의의 힘을 갖고 있는 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일단 기소만 되면 사회적으로 그 사건은 불법으로 정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권의 영향에서의 독립이 아니라 이런 사건 정의의 힘, 검찰권에 대한 시민들의 통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찰권 통제란 무엇인가. 먼저 인적 구성의 통제, 그리고 검찰권 행사의 통제 등의 문제가 있는데, 인적 구성에 대한 통제는 선거제도나 인사위원회에 의한 통제가 있을 수 있겠고, 검찰권 행사의 통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검찰 심사회 제도나 미국의 대배심제도와 같은 방안들이 좀더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

김진욱 이호중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시민사회에서는 검찰개혁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핵심으로 사고했고 제도적 보완도 그쪽에 초점을 맞추어 제기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나름의 성과가 있어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제도, 검찰총장 임기제, 청와대 파견검사 금



지, 검사동일체 원칙 완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기구화, 특검제, 재정신청법률 등이 확대되었고 개선되었습니다만, 오늘 이 시점에서 검찰의 최근 행태를 생각해 보면 크게 나아진 것 같지 않아, 그간의 검찰 중립화 요구가 무언가 잘못된 방향을 가르키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BBK 문제 처리는 이 단적인 예입니다. 토론과 논쟁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는 민주주의적 원칙보다는 검찰, 혹은 특검에만 이를 밝히는 권한이 있다고 미리 가정하고 사건이 처리되어 버린 것은 문제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인정하고 이를 올바르게 사용하라고 할 일이나, 아니면 이를 깨뜨릴 것이냐 하는 문제로 본다면, 앞으로는 구조를 깨뜨리는 쪽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무엇을 수사하거나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판단의 문제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수사할 것인가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사의 시작시점에서부터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어느 단계까지 수사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고려까지 끼어들게 되면 다분히 자의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어떤 진술 증거를 채택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도 검찰의 권한입니다. 검찰만이 유일하게 증거 제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이나 압수수색 등의 권한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나라는 이런 예가 없습니다. 이런 게 독점되면 될수록 사실규정 권한이 확대됩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검찰만 이런 사실화 규정의 권한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수사야 일반의 수사기관이 하는 일이고 검찰은 이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감시하고 법정이라는 공론의 장에서 주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와 같이 자기가 수사하고 주장하고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독일의 경우 기소법정주의를 취함으로써 법적 통제가 그만큼 크다고도 볼 수도 있겠으나, 우리의 경우에는 검찰이 사건을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소편의주의이므로 법적 통제도 그만큼 약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검사의 보직변경도 징계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런 인사권도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이 틀어쥐고 있어 검찰 고유의 사실확정권이 인사권자에까지 확장되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민주주의는 작동되기 어렵습니다.

대안으로 예를 들자면 선거제, 지역 분권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듣기에는 생경한 점이 있겠지만, 검찰의 선거제에 대한 부분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검찰을 국민이 못 뽑느냐는 점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을 주로 사법기관, 혹은 준사법기관이라고 보지만, 저는 본질적으로 행정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사법기관이 맞습니다. 논리에 근거해서 답을 찾을 뿐 다른 행정 목적의 논리가 끼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다릅니다. 수사를 함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판단은 '경제안정'이나 '사회문화적 이유', '사회정화'와 같은 일정한 목적을 전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정한 목적을 위해 한 개인을 구속, 압수, 수색한다면, 그 목적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받았는가 하는 의문제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때문에 검찰을 일종의 행정기관으로 본다면 선거로 뽑는 것이 타당합니다.

선거란 공약이 등장하고 이를 매개로 대화가 일어나고 검찰에 대해서도 국민이 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지방분권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현재 검사장 급의 지방검찰청장이 있는 18개의 지방검찰이 있습니다만 좀더 분권화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검찰개혁, 분권화를 고민하자

박근용 그러면 좀더 논의를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이호중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점, 즉 DJ 이후 거론되었던 검찰개혁방안들이 이제 약효가 떨어진 것 같아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지점으로 접근해 가야 하는

지, 이런 갈등을 풀 새로운 얘기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검찰 권력을 많이 쪼개서 분권화하는 방안인데, 굳이 지역분권의 의미가 아니라 사건처리 수준에서의 분권 처리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검 사건들은 지금은 꼭 고검에서 항고처리를 하는데, 선배가 고검에 있고 고검 선배의 선배가 배심제심에 있다 보니까 서로 같은 식구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각기 별개 조직으로 되어 있으면, 잘못된 사건을 좀더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김진욱 변호사님께서 일직선상에 있는 조직을 가로 세로로 좀더 나누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지만, 선거 문제는 검찰의 본질적 한계를 해결하는 기능도 하겠으나, 그래도 이른바 '포폴리즘'이라는 공격이 염려됩니다. 물론 검찰 권력은 통치자로부터가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영향 받아야 한다는 뜻이겠지만,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호중 막상 선거를 하게 된다면 검찰이 도리어 더 정치화될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물론 하게 되더라도 교육감 선거와 마찬가지로 정당 소속 출마는 허용이 안되겠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 정당과의 커넥션이 또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도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인사위원회에 외부 사람이 반 이상 들어가게 한 다든지 그런 제도들이 더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김진욱 저도 당장 추진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신 선거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 구조의 문제는 좀더 시스템화해서 분권화시키고 지역별 분권화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방향은 먼저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독일만 해도 검찰은 연방검찰과 주 검찰로 이원화되어 있고, 연방검찰이 주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방검찰청의 검찰총장과

검사는 연방 상원의 승인을 얻어 연방대통령이 임명하고 주의 최고검찰청장은 각 주 정부의 수상에 의해 임명되는 구조입니다. 미국은 법무부장관이 연방 검찰총장을 겸직하는 구조인데 주정부의 검찰청장은 선거로 선출되며, 각 주의 지방검사들도 주민이 직접 선출합니다. 모두 검찰 상호 간에 인사권은 나뉘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곳이 일본인데, 일본도 기본적으로 내각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임명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최고통수권자 한 사람의 의사에 모든 사람이 집중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상희 선거제도 자체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저는 검사나 법관들의 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는 지방의 변호사회라든지 이런 곳들이 중심이 돼서 지방의 검사장이나 법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체제, 즉 검찰의 정치성을 견제할 수 있는 법공동체 형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선거제도를 당장 도입하기보다는 그런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목표를 두고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근용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 옛날에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운동을 해서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검사동일체 원칙이 아까 말했던 이 중앙집권적인 콘크리트 틀 안에서만 기능할 수 있는 원칙인데, 아예 이걸 기능적으로 나누어서 검찰 조직이라는 게 여러 조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다면 검찰개혁운동의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개혁 문제라든지 선거와 같은 방법도 검찰의 권한 행사를 좀더 분산시켜야겠다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기능적인 면에서 검찰조직의 권한과 역할을 나누는 것이지만, 이 틈에서 국민의 영향력이 투여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건강한 긴장관계는 불가능한가

이호중 검찰 조직의 기능을 분산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현재 검찰의 위계질서는 한번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고검은 없애고, 대검은 정책기구화시켜도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좀 요원해 보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거론했으면 하는 부분이 법무부입니다. 검사들이 사실상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제대로 건전한 견제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는 일단 법무부와 검찰을 분리시키면서 법무부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좀 갖게 하고, 그래서 법무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만약 변호사 자격이 요구된다면 변호사 중에서 뽑고 해서 정책 기능을 담당하면서 검찰에 대한 견제도 하고, 전 오히려 그런 부분을 강하게 제기하는 게 중요한 개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욱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법무부는 검찰청에 대한 상급 기관인 셈인데, 최고의 엘리트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검찰이 변호사들의 관리를 받으려고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법무성이 주로 판사로 구성되지 않느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지만 일본의 검사는 우리나라의 검사와 다릅니다. 일본 검사들은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힘도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선거제도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왜냐면 선거제도를 통해 사람을 뽑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인사는 그 사람이 맡게 되기 때문에 지역 내 검사들이 다른 지역으로 전보되거나 파견되는 문제가 풀립니다. 그러면 이 검사들이 활동하는 범위가 자기가 일을 시작한 곳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또 검사가 법무부 같은 곳으로 가는 것도 상당한 결단을 필요하게 되지요.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박근용 참고로 말씀드리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무부와 검찰이 지난 수 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교류가 있었는지 곧 자료를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하고 균형을 맞추기도 하고 견제도 해야 하는데, 이건 거의 일체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지요. 옛날에도 법무부장관이 검찰 출신이 아닌 분은 딱 한 분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분과 강금실 장관과 천정배 장관 빼고는 나머지 법무부 장관은 전부 검사 출신이었던 셈인데 검찰이 가장 잘 하던 시절이 이 세 사람이 있던 시절이 아니었냐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이호중 모든 국가소송에 검사가 국가를 대리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 웃기는 얘기구요. 해당 부처의 법률가가 하면 되지요. 일단 변호사 수는 늘려야 됩니다. 현재는 변호사 수가 적어서 돈 잘 버는데 아무리 개방적으로 한들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한상희 변호사가 적다 보니까 검사가 일종의 국가 변호사의 역할을 겸하는 경향이 형성되어 왔어요. 그 잔재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 둘을 분리시킬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 당당하고 소신 있는 검사가 없는가

민경한 저는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검찰이 정치검찰화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단 막강한 권력에 비해 제도적으로 통제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이고, 다음으로 당당하고 소신 있는 검사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이론적인 접근보다는 사례를 들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측면에서 보자면 검찰청법에 검찰총장 임기보장은 2년이고 중임금지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 임기 2년을 지킨 사례는 절반도 안 됩니다. 검찰총장들의 좀더 소신 있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 비서실 직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검사가 청와대에 파견되어 수사 상황을 보고하거나 수사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지시나 간섭을 받을 위험을 미리 방지해서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운용 행태를 보면 일단 검사를 사직하고 청와대에 파견되었다가 다시 검사로 복직하는 편법을 이용합니다. 얼마 전에도 검사 4명이 청와대 떠난 다음 날로 복직되었지요. 검찰도 행정부의 한 부처인데 다른 부처와 같이 청와대에 파견되는 게 뭐가 문제냐 하는 의견도 있지만, 보고는 각료회의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청와대에서 조사나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공식적으로도 검찰에 넘기면 되는데 왜 굳이 검사가 청와대에 파견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검찰에 대한 통제 측면에서 보면, 검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검사장급인 법무부 검찰관과 대검 검찰부장을 개방직으로 공모한다고 2007년 12월 20일에 검찰청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모두 현직 고검 검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생색만 내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는 현직의 자리만 늘리고 외부 통제는 받지 않으려는 검찰의 한심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 지금은 많이 약화되었지만, 공안부나 법무부, 대검에 근무하는 검사가 형사부나 강력부, 특수부 등 일선에서 고생하는 검사들에 비해서 승진이나 이런 면에서 우대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이 우대받다 보니까 검사들이 정치를 알게 되고, 총장에 충성하려고 하는 경향도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검찰의 정치 편향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

민경한 형평성을 잃은 최근의 정치적 편향 수사 문제와 관련해서 좀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인데 금년 회의에서 계속 토의 주제가 법 원칙 준수입니다. 계속 그런 주제들만 올라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검찰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자고 외쳐봤자, 구체적인 사건에서 공정한 법적 대응을 보여주지 못하면 냉소만 불러일으킬 뿐, 아무 효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검찰은 최근 촛불집회, PD수첩, 정연주 사장 수사 등에서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인 것 같습니다. 또 언론에서 수없이 언급되었습니 다만, 사이버모욕죄 신설도 보면 8월에 법무부 정책위원회의의 안건이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위원들이 반대했는데 최진실 사건이 터지니까 ‘최진실법’이라고 해서 반대를 무릅쓰고 입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위진압경찰 면책 등도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법집행기관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 의심스럽습니다.

박근용 그렇다면 어떻게 일선 검찰의 정치적 편파수사에 대해 통제할 수 있겠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특히 정치적인 현안에 대한 수사 개시·강도·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대폭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공소심의위원회가 있고, 구속심사위원회는 검찰청마다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는데, 이런 심사기구들에 민간인도 참여시키고 활성화시키면 상당 부분 통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배심원 재판의 대상이 주로 강력사건인데, 정치적인 사건도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부당한 수사를 받고 무죄판결을 받은 정치성 사건들에

대해서는 수사권자를 비롯한 결재권자들이 책임져야 하고 이런 담당자들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아까 언급했던 대상 사건의 경우 담당검사에 대한 약한 문책밖에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겨우 부산으로 전보하는 것에 그쳤는데, 그 정도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했으면 엄청난 잘못을 한 것인데 이 정도 문책에 그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 좀더 나가면 검찰총장 소환제도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렇게 수사가 미진하면 참여연대 등에서 주장했던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듯 제도가 완비되었더라도 저는 역시 사람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공공의 적 2’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나오는 강철중 검사, 그리고 강철중 검사에 대한 외압을 막아 보호막 역할을 해주었던 상사인 부장검사, 검사장,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야만 부당한 거악을 척결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상희 아마 그 영화가 검찰청 자문을 받았을 것인데, 그렇다면 검사들도 영화에서 그런 그런 검사가 제대로 된 검사라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하는 건지 참 알고도 모르겠습니다.

검찰개혁, 이제 2% 시작된 것에 불과

민경한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잘 아는 검사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이런 토론회가 있는데 평소 검찰이 권력화나 정치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다음과 같이 말하더군요. 좀 길지만 인용해 볼게요. “지금 검찰이 무엇이 권력화되고, 무슨 힘이 있느냐. 검찰은 법원에 비해서 엄청난 통제를 받는다. 시민단체에서는 차라리 검찰보다 법원을 통제하는 방법

을 한번 마련해 보라. 검찰은 모든 범죄에 대해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금년부터 확대되어 일단 거기서 통제받고, 또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등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통제받고, 그래서 정치인, 재벌총수들을 애써 기소하면 법원에서 다 풀어줘 버리고 공직선거 위반 사범들도 기소해 놓으면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신분을 유지시켜주고... 검찰이 무슨 권력이 있느냐, 그건 다 옛날 말이다. 몇몇 정치검찰이 일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산 문제, 인사 문제 등등 너무 통제받고 있고... 인사만 해도 대법원장은 6년 동안 인사권을 휘둘러 버리는데 검찰총장은 2년에 불과하다.”

박근용 옛날보다 영장 등이 법원에 의해 많이 견제를 받으니까 그런 볼멘소리가 나올 수도 있으리라 보는데 여기에 대해 반박한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한상희 일면 맞는 말이지만, 그동안 검찰 권력이 너무 비대해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너무 비대해졌던 검찰 권력은 지난 정부 때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의 일부분을 법원에 넘겨줬거든요. 재정신청 같은 것은 대표적인 경우구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사법시스템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의 일부분이 떨어져 버리니까 볼멘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2%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이제 2%가 시작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밀히 본다면 검찰은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더불어 한 당사자여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이 법관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대체해 버리거나 압도해 버렸거든요.

박근용 제가 보기에는 법원과 검찰의 관계에서만 보면 검찰의 권력이 전보다 낮춰졌다고도 볼 수 있지만, 국민과 검찰 간의 관계에서 보면 검찰의 권력은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권력 자체가 전혀 줄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검찰의 항변이 진실의 극히 일부분만을 말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들 스스로도 법원에 가서 당하는 것만 생각하지 스스로 얼마나 많은 권력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합니다.

민경한 제가 한 얘기로 많은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 검사장의 얘기에 대한 저의 생각은, 검찰도 점점 내부통제를 받고, 또 법원으로부터도 통제 받는다는 것은 맞지만, 아직 체계만 있을 뿐 현실에서는 약하다, 정작 구체적인 사건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내부고발사건 이후, 검사장급 이상 30~40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2명만 우리가 수사하자고 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정치 지향적이 되고 몸조심하게 되고, 굳이 큰 적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우리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했던 2명 같은 그런 사람이 많았다면, 30명 중에 10명만 됐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중 한 명은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평검사들은 상당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위에서 눌러버리고, 못하게 하고... 소신 있고 기개 있는 검사들이 많이 등장하면 좀더 나아질 텐데요.

이호중 그런데 그 2명이 10명이 되고 30명이 되는 과정이 무엇이냐 이거죠. 제도적으로 우리가 그런 검사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 문제입니다.

박근용 오늘 우리가 검찰의 과거사 반성의 문제에서부터 현재의 검찰의 모습, 그리고 미래에 그려야 할 새로운 검찰의 상까지 숨가쁘게 토론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쏘아 보더라도 검찰 권한의 본질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검찰의 현재 행태에 대한 조망의 문제, 또 분권화 문제, 검찰 선거의 타당성 문제, 법무부와와의 관계 문제 등등을 얘기했습니다. 이 각각은 그 하나만 가지고도 토론 주제가 될 수 있는 중량감이 있는 주제여서 좀더 긴 시간 동안

밀도 있게 토론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만큼 과제도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오늘 간담회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